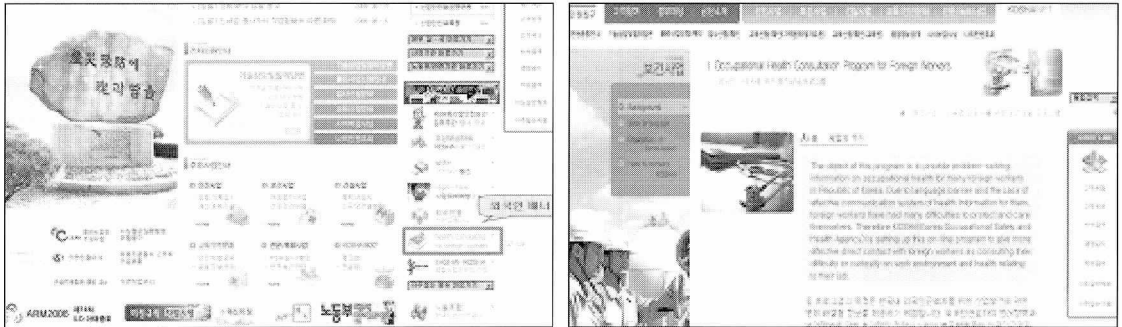


외국인 근로자용 보건상담 온라인 서비스 개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상담실 홈페이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업병 상담서비스가 실시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보건상담 홈페이지(www.kosha.or.kr/foreignworkers)를 개설해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상담내용은 ▲ 작업현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 근무하고 있는 작업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여부, ▲ 방진·방독마스크의 적절한 사용요령, ▲ 건강상 이상증후 또는 증상 등이다

상담은 국내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상담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사용하면 된다.

상담방법은 On-line 서비스 외에 Fax 또는 전화도 가능하다.

'05. 1월에 노말렉산에 의한 다발성 신경장해(태국근로자 8명)가 발생한 이후 '06년도에도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에 의한 중독으로 스티븐슨존슨증후군 및 급성간염이 발병, 2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길상 안전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언어장벽 및 신분상 불이익 등으로 직업병예방 관련 정보를 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 개설한 온라인 서비스는 이러한 애로점을 해소하고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었으며 특히, 익명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건강하고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년 상반기 산업재해감소협의회 회의개최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지청장 고장수)은 2006. 6. 29(목) 경인지방노동청 안산지청에서 『2006년 상반기 산업재해감소협의회』회의를 개최하였다.

산업재해감소협의회는 안산·시흥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산업재해감소 목표·대책수립 및 재해예방 기관간 상호 정보교환과 산업재해감소를 위한 협조체제 확립을 위하여 구성되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경인지방노동청 고장수 안산지청장은 효과적인 재해예방 확립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의 재해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안산지청은 앞으로 도 반기 1회 이상 산업재해감소협의회를 개최하여 안산·시흥지역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산재예방 검찰합동점검 실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은 '06. 6. 1 부터 7. 5 까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및 산업안전공단 서울본부와 합동으로 관내(강서, 양천 및 영등포구)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거나 또는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20개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1명을 입건하고, 44건에 대하여 개선토록 시정조치 하였다.

이번 점검은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을 촉구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산업재해 예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 위험방지를 위한 사업 중의 조치 사항 이행, 근로자의 교육, 건강검진, 보호구 지급 및 산업안전관리비의 적정한 집행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건설현장에서 낙하 및 감전위험이 있음에도 산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5건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양천구 신정동 소재 E건설사에 시공하는 주상복합신축현장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치하였으며, 그 외 10개 건설현장과 8개소의 사업장의 지적사항 44건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시정조치, 안전방호장치를 하지 아니한 위험기계기구 1건은 사용중지 명령, 기타 목적 외 안전관리비 집행 등 6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울남부지청은 산재예방을 위한 검찰합동점검은 매년 상하반기에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05년도 상반기와 비교하여 지적 건수가 23%정도 감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경영여건임에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이행 상태가 점차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예방조치 여전히 미흡

노동부는 장마가 시작되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건설현장

1,016개소를 안전점검한 결과, 96%인 972개 현장에서 법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은 등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H건설 등 2개 현장은 전면작업 중지, 26개 현장은 부분 작업중지조치를 했고, 34개 현장 42건의 기계·설비를 사용중지시켰다. 또한, 14개 현장에서 26건의 법위반으로 13,729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사항 3,500여건은 시정토록 했다.

〈 법위반 사업장 조치내역 〉

(단위 : 개소, 건)

위 반 사업장	작업중지		사용 중지	과태료 부과	시정 지시
	전 면	부 분			
972	2	26	42	26 (13,729천원)	3,513

건설현장의 위반내용은 추락·낙하예방조치 미흡이 1,705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고, 감전예방조치 미흡 458건(13.1%), 붕괴예방조치 미흡 252건(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시정지시별 위반유형 〉

(단위 : 개소, 건)

계	추락·낙하 예방조치	감전예방 조치	기계· 기구·시설	붕괴예방 조치	화재 등 예방조치	기 타 조치
3,513 (100%)	1,705 (48.5%)	458 (13.1%)	344 (9.8%)	252 (7.2%)	50 (1.4)	704 (20%)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건설현장 재해는 주로 추락, 낙하, 감전 등의 사고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현장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의 개선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 부산 특수건강진단기관 첫 지정취소

건강검진 결과를 잘못 판정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대해 국내 최초로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못하게 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4월 29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DMF 취급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부산 P병원이 산업연수생 김모씨(남, 33세, 중국동포)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잘못 판정, 독성간염으로 사망한데 따른

책임을 물어, 오는 15일부터 특수건강진단업무를 할 수 없도록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였다고 13일 밝혔다.

DMF(디메틸포름아미드)는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 물질에 노출시 체질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배치 전 및 배치 후 1개월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관리하고 있는 유해물질이다.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는 처음 있는 사례로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검진기관의 부실 건강진단으로부터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P병원은 '06. 2. 27에 부산 소재 B사업장에서 DMF 취급 업무를 하던 산업연수생(남, 33세, 중국동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간기능이 현저히 악화되어 DMF 취급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근무가 가능하다고 판정, 작업을 계속케 함으로써 DMF 취급업무 후 80여 일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P병원은 DMF의 인체내 흡수량을 확인하는 도중 NMF 검사시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근무중 치료’ 소견을 제시하는 등 특수건강진단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한 판정을 하였으며, 사건의 조사과정에서는 사업장에 송부한 건강진단결과 개인표와 다른 결과표를 허위 작성·제출하고, 문진을 하지 않고 문진결과를 ‘정상’ 이라고 표시하는 등의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동 근로자를 사용한 B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엄중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 특수건강진단지제도란?

직업성질병 예방을 위해 유해인자(177종)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 유소견 여부·사후관리 조치·업무수행 적합여부 등을 판정하여 근로자 생명보호 및 건강관리에 활용

■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현재 120개 의료기관을 지정)